

#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168
--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2009. 6. 30  
제 출 자 고성군수

### 1. 개정이유

- 가. 특수경력직공무원(별정직공무원)에 외국인 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 완화
  - 국가안보 및 보안·기밀관련 분야 제외
- 나.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공무원법 개정(2008.12.31) 사항을 반영

### 2. 주요내용

-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(안 제4조의2)**
  - 가. 국가안보 및 보안·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 마련
-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**
  - 가.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(안 제11조제1항)
    -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(출산휴가와 연계 하여 3개월 이상)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 가능
  - 나.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(안 제11조제2항)
    -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음
-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 마련(안 제12조)**
  - 가.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 반영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및 근거

- 「지방공무원법」
-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-534(2009.02.25)호 및  
경남도 행정과-6699(2009.02.26)호와 관련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### 4. 본 문 : 덧붙임

## 고성군 조례 제 호

#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**제명** “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”를 “고성군 지방별 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

**제2조 제3항** 중 “법 제2조제3항제2호 다목”을 “법 제2조제3항제2호”로 한다.

**제4조의2**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4조의2(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)**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**제11조**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11조(병역·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)**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)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.  
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.

**제11조의2**를 삭제한다.

**제11조의3 제2항** 중 “제11조제1호”를 “제11조”로 하고, 동조 제3항 중 “당연 복직되며,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”를 “당연히 복직된다”로 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12조(근무성적의 평정)**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·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야 하며,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13조 (징계)**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」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14조 (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)**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15조 (시행규정)**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명 <u>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</u></p> <p>제2조(적용범위) ① ~ ② (생략)         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.</p>	<p>제명 <u>고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2조(적용범위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③-----법 제2조제3항제2호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</p>
<p>&lt; 신설 &gt;</p> <p>제11조 (휴직)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,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헐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된 때</li> <li>2.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(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)</li> </ol>	<p>제4조의2(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)         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</p> <p>제11조(병역·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)         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)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.</p>
<p>제11조의2 (휴직기간)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.</p>	<p>제11조의2 (삭제)</p>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의3 (휴직의 효력) ① (생략) ② <u>제11조제1호</u> 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	제11조의3 (휴직의 효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제11조</u> _____ _____ _____ _____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<u>당연 복직되며,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.</u>	③ _____ _____ <u>당연히 복직된다.</u>
< 신 설 >	제12조(근무성적의 평정)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· 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,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
< 신 설 >	제13조 (징계)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」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
< 신 설 >	제14조 (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)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.
< 신 설 >	제15조 (시행규정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